

2012. 12. 13(목) 10:00

제188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3년도 기금운용 심사 보고서

총 무 위 원 회

【목 차】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기금	-----	3
<input type="checkbox"/> 식품진흥기금	-----	4
<input type="checkbox"/> 아림예술제진흥기금	-----	5
<input type="checkbox"/> 체육진흥기금	-----	6

[2013년도 거창군 기금운용 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2. 11. 16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2. 11. 19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2. 12. 6
- 마. 의안번호: 제2012 - 90호

2. 제안사유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각 기금별 기금 설치·운용조례의 규정에 따라 관리 중인 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의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함.

3. 기금운용 계획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기금명	2012년말 현재액 ①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3년도말 조성액 ④=①+②-③	증감
		수입 ②	지출 ③		
합계 (4개)	4,326	197	294	4,229	△97
사회복지기금	3,744	169	273	3,640	△104
식품진흥기금	26	8	3	31	5
아름 예술제 진흥기금	502	18	18	502	0
체육진흥기금	54	2	0	56	2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주민생활지원실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12년말 현 재 액 ①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3년도말 현 재 액 ④=①+ ②-③	증감
		수 입 ②	지 출 ③		
사회복지기금	3,744	169	273	3,640	△104

◆ 사회복지기금(p11)

- 사회복지기금은 종전의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정책발전기금 등 4개 기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2012년 조례 제2093호)에 의거 관리운영하는 기금으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생활안정 지원사업, 노인복지 지원사업, 여성복지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재원조성은 군의 출연금, 기탁금, 기금운용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금으로 조성 운영되고 있으며,
- 지원기준은 매년 이자 수입액 범위 안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사업의 경우에는 기금에서 지원하며
 -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원사업의 1인당 지원기준액은 중학교 일반장학생에게는 40만원, 중학교 특별장학생과 고등학교 일반장학생에게는 각각 60만원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게는 80만원을 지급하며
 -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은 자활공동체 및 개인의 사업자금 대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으로 하며

-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자에 대한 생계 자금, 무주택자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등을 지원 하며
 - 노인복지 지원사업은 다수의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유익하고 호응이 좋은 사업과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며
 - 여성발전 지원사업은 여성단체 등을 통한 건전한 군민운동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여성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함
-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말 현재액은 3,744백만원이며, 201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69백만원, 지출 273백만원이며 2013년도 말 현재액은 3,640백만원으로 기금은 농협에 예치되어 있음.
- 당초 기금설치 목적대로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민원봉사과**(p19)

(단위 : 백만원)

기금명	2012년말 현재액 ①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3년도말 현재액 ④=①+②-③	증감
		수입 ②	지출 ③		
식품진흥기금	26	8	3	31	5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제82조 및 같은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한 과징금,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며,

-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말 현재액은 26백만원이며, 201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8백만원, 지출 3백만원이며 2013년도 말 현재액은 31백만원으로 기금은 농협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음.
- 당초 기금설치 목적대로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문화관광과

(단위 : 백만원)

기금명	2012년말 현재액 ①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3년도말 현재액 ④=①+②-③	증감
		수입 ②	지출 ③		
아림예술제 진흥기금	502	18	18	502	0

◆ 아림예술제진흥기금(p24)

- 아림예술제진흥기금은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에 의거 향토 문화·예술축제인 아림예술제 행사의 원활한 추진과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진흥기금을 설치한 것으로 재원 조성 방법은 출연금 및 보조금과 아림예술제 행사인여금, 기타수익금 등으로 하고 있으며,
- 지원기준은 매년 아림예술제위원회의 사업계획에 따라 총 행사비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며
-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말 현재액은 502백만원이며, 201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8백만원, 지출 18백만원이며 2013년도 말 현재액은 502백만원으로 기금은 농협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음.

- 당초 기금설치 목적대로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시설관리사업소

(단위 : 백만원)

기금명	2012년말 현재액 ①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3년도말 현재액 ④=①+②-③	증감
		수입 ②	지출 ③		
체육진흥기금	54	2	0	56	2

◆ 체육진흥기금(p28)

- 체육진흥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에 의거 거창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 지원기준은 거창군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영역으로 하며
- 지원대상은 군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우수선수 육성 사업, 군 민체육대회 개최, 도민체육대회 참가 등을 지원하며
-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말 현재액은 54백만원이며, 201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2백만원으로 2013년도 말 현재액은 56백만원으로 기금은 농협에 예치되어 있음.
- 당초 기금설치 목적대로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